약사포상시상 심사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회 약사포상시상규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포상의 종류) 이 내규에 적용을 받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약사금장 … 5인 이내(개정 14.12.18)
2. 약연상 … 개국약사부문 5인 이내(개정 12.9.20)
3. 약사금탑상
 · 개국약사부문 : 1인
 · 약학연구부문 : 1인
 · 공직·병원·제약부문 : 1인(개정 12.9.20)
 · 사회봉사부문 : 1인
 · 약사회발전부문 : 1인
4. 여약사대상 … 여약사 5인 이내(개정 12.9.20)
5. 대한약사회장 표창(일반표창)(신설 10.2.5)
6.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 … 5인 이내(신설 13.9.26, 개정 14.12.18, 15.7.16)
7. 약사봉사대상 … 약사 5인 이내(신설 17.7.21, 개정 22.9.22)

제3조(수상자 선정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개정 10.2.5, 10.11.18)

1. 본회 및 지부의 현직 주요 임원. 다만, 포상 대상 임원이 외부 추천기관의 공적활동으로 인해 추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8.2.8, 개정 22.9.22)
2. 최근 3년간 행정부 또는 대한약사회에서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회원신고 미필자 (최근 3년간 1회 누락된 자 포함)(개정 22.9.22)
4.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개정 10.2.5)
5.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6.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7. 기타 회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

②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은 본회 및 지부임원, 분회장으로서의 회무경력이 없는 일반회원으로서 사회 봉사자를 발굴하여 우선 시상한다. 다만, 일반회원 중 적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적활동이 뛰어난 전·현직 임원을 추천받아 시상할 수 있다.(신설 13.9.26, 개정 14.12.18, 15.7.16, 18.2.8)

③ 약사금탑 수상 후보자 추천이 특정 부문에 편중되거나 추천이 없는 경우 후보자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15.7.16)

제4조(현직 주요임원의 범위) 제3조 제1호의 주요 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 회장단, 상임이사, 감사
2. 지부 : 지부장
3. (삭제 10.11.18)

제5조(중복시상의 배제) ① 제2조에 규정된 포상은 중복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약사금장, 대한약사회장표창(일반표창)은 예외로 한다.(개정 10.2.5, 개정 22.9.22)
② 대한약사회장표창(일반표창)의 경우 수상 후 5년이 경과하면 수상할 수 있다.(신설 22.9.22)

제6조(추천범위) 본회 약사포상시상규정 제8조(추천)에 의한 추천권자 중 '대한약사회 지부장'은 해당 지부 소속 회원으로 하며, '약학대학(과)장'은 해당 대학 소속 교직원에 한정한다.

제7조(대한약사회장표창 인원) 회원현황에 따른 대한약사회장 표창 인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지부의 회원 구분	수상인원
6,000명 이상	본회 총회시 5명 이내 지부 총회시 7명 이내 여약사대회시 3명(신설 10.2.5)
4,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본회 총회시 4명 이내 지부 총회시 6명 이내 여약사대회시 2명(신설 10.2.5)
2,000명 이상 ~ 4,000명 미만	본회 총회시 2명 이내 지부 총회시 3명 이내 여약사대회시 2명(신설 10.2.5, 개정 10.11.18)
2,000명 미만	본회 총회시 1명 이내 지부 총회시 2명 이내 여약사대회시 1명(신설 10.2.5)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여약사대회시 3명 이내 (신설 10.2.5, 개정 22.9.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5)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8)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20)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26)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8)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16)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21)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8)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 22)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